

창원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나10217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나102179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2. 1 선고 2022가소297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세, 담당변호사 전재근, 최승룡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택림

변론종결 2024. 3. 15.

판결선고 2024. 5. 3.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2. 1. 선고 2022가소2971 판결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가입계약의 체결

원고는 2022. 1. 21. 피고로부터 가입기간 2022. 1. 21.부터 2022. 10. 24.까지, 가입비 900만 원으로 정하여 증권정보제공 서비스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가입비 900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환불 규정)

회원은 서비스제공기간 동안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회원이 본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의 기간 이내(만약 본 계약서를 받은 날 이후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환불금액 = 회원 결제금액 - (1일 이용금액*서비스 이용일수)

제5조(책임과 의무)

1. 회사는 투자 정보 제공업체로서 당사가 제공하는 모든 투자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나. 원고의 카드 재결제 등

원고는 2022. 1. 24.경 피고의 안내와 달리 위 가입비에 관하여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카드 결제가 되었다며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가입비를 600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종전 가입비 카드 결제 취소가 이루어졌다. 이후 원고는 다시 2022. 2. 18. 50만 원, 2022. 3. 11. 500만 원, 같은 날 5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총 3차례에 나누어 카드 결제하였다.

다. 책임수익 환급증서의 작성

원고는 피고로부터 증권정보제공 서비스를 받던 중 자신의 증권 계좌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자 피고에게 불만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2. 6. 2.경 서비스 제공기간(2022. 6. 2. ~ 2022. 8. 2.)이 모두 도과한 시점에 목표 누적수익률 100%를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용요금을 전액 환급하겠다는 내용의 ‘책임수익 환급증서’(이하 ‘이 사건 환급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의 환불 요청 등

원고는 이 사건 환급증서에 기재된 서비스 제공기간 2개월이 지나도 증권 계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피고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문자 기준으로 종목 수익률 합산 100%를 넘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0, 11, 12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 30% 이상의 수익은 확실히 볼 수 있고 2개월에 100% 이상의 수익률은 무난히 가능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가입비 전액 환불을 해준다는 내용의 증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증권 계좌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환급증서를 작성해주며 언급한 ‘누적수익률’은 원고의 증권 계좌 수익률 대비 100%가 아니라 피고의 추천 종목 중 수익이 난 종목의 단순합산 누적수익률 100%를 말하는 것이었는바, 이를 알았다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허위과장 광고 내지 기만적 방법을 이용해 이 사건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위반 내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 해제 및 이용료 전액 환급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입비 600만 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2개월 안에 누적수익률 100%가 되지 않으면 가입비 전액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위 약정은 원고의 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것 내지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위 약정이 무효인 이상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계약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에게 가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지 3일만인 2022. 1. 24. 피고에게 계약취소 내지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7일 이내에는 환불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는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계약취소 내지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이상 피고는 가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허위과장 광고 내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들고 있는 광고내역(갑 제1호증)이 허위 · 과장광고라거나, 주식리딩 피해사례(갑

제7호증)가 피고에 관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최소 30% 이상의 수익은 확실히 볼 수 있다거나, 2개월에 1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가입비 전액 환불을 해준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증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항에는 ‘회사는 투자 정보 제공업체로서 당사가 제공하는 모든 투자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규정과 같은 내용이 2022. 1. 27. 피고에게 고지되었는바, 원고 주장과 달리 피고가 제공하는 투자정보로 인한 투자 책임은 회원인 원고가 지기로 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환급증서상 환급조건인 ‘누적수익률 100%’에 관하여 원고의 증권 계좌 수익률 대비 100%가 아니라 피고의 추천 종목 중 수익이 난 종목의 단순합산 누적수익률 100%를 기준으로 한 것은 기망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환급증서에는 ‘※ 환급조건 책임수익 환급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계약 기간동안 회사가 추천한 내용(종목명, 매수가)에 따라 수익을 실현하였으나 단순 목표 누적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환급 절차에 따라 요청 시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4. 누적수익률계산은 수익 종목 단순합산기준이며 B 발송문자 기준으로 책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이 별도의 구두 설명이 있어야 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원고는 이 사건 환급증서에 직접 서명까지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발송한 문자 기준으로 추천 종목 수익률 합산 수치가 100%를 넘는다는 이유로 가입비 환급을 거절한 것을 두고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피고가 환불수수료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도록 기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지 7일이 되지 않은 2022. 1. 24.경 피고 직원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6항과 달리 환불수수료 10%가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후 위 안내 내용과 달리 피고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가입비 900만 원의 카드 결제 전액을 취소되도록 한 점, ② 갑 제3, 10, 12호증의 녹취록은 원고가 대화 일부만 발췌하여 제출한 것이어서 전체 대화내용을 알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환불수수료 안내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전체 취소를 해주기로 하였지만 원고의 동의하에 가입비를 낮추어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뒤(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환불수수료 안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2개월 안에 누적수익률 100%가 되지 않으면 가입비 전액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계약해지 내지 청약철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불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지 3일 지난 2022. 1. 24.경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 제4조는 ‘회원은 서비스제공기간 동안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직원은 2022. 1. 26.경 전화 통화에서 가입비를 600만 원으로 할인·감축하여 줄 테니 계약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아 보는 것을 제안한 점, ② 이에 대해 원고는 ‘그냥 취소를 하겠다.’고 말하였지만, 이후 종전 가입비 900만 원에 대해 카드 결제 취소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총 3차례에 걸쳐 변경된 가입비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피고로부터 수개월간 증권정보제공 서비스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 내지 청약철회 의사표시 이후 이를 철회하고 가입비를 600만 원으로 낮추어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훈, 판사 이진석, 판사 김상욱